

사 규 번 호	
관 리 부 서	
등 급	일 반

경영위원회 규정



경영위원회 규정

2021.03.26 제정

2022.03.08 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39조의2,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삼양식품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경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(구성)

-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전까지 충원을 해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(소집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6조 3항을 준용한다.
-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, 전자우편,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7 조(결의방법)

-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결의할 수 있다.
-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①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 - (3) 조직, 인사,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
 - (4) 사업계획·사업구조조정 추진
 - (5) 해외 지사·현지법인 등의 신규진출, 이전 및 철수

- (6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 - (7)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 - (8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- (9) 기타 주요 경영현안
- 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각 항의 사항 중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(단,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. 또한 제2항 각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이사회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이사회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)
- (1) 자기자본 5%미만의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 - (2) 자기자본 5%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 - (3) 자기자본 10%미만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의 신설 및 차입계약 체결
 - (4) 자산총액 5%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
 - (5) 자산총액 5%미만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
 - (6) 사채의 모집
 - (7)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
 - (9)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
 - (10)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- ③ 이사회규정 제10조 2항을 준용하여, 경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/집행한다.

제 9 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(외부 자문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.

제 11 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타

제 13 조(간사)

- 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재무, 전략, 인사 등 회사 전반의 경영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부서장급 이상의 인원으로 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2. (개정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